

□ 마약사범 처벌규정

관련법조	항	호	내용	의무조항	벌칙
제58조 벌칙	①	1	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 (대표품목 : 헤로인, 코카인 등)	3-2 3-3 4-① 5의2-④	-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
		2	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	3-4	
		3	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 (대표품목 : JWH-18, 메스케치논 등)	3-5	
		4	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 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	3-6	
		5	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·소유한 자 (대표품목 : 대마)	3-7	
		6	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 (대표품목 : 메트암페타민 등)	4-①	
		7	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· 조제·투약·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 제공한 자	4-① 5의2-④	
	②	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자		-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	
	③	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		- 처벌	
	④	제1항(제7호제외) 및 제2항을 예비·음모한 자		- 10년 이하의 징역	

관련법조	항	호	내용	의무조항	벌칙
제59조 벌칙	①	1	수출입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·종자·종묘를 소지·소유한 자	3-2	-1년 이상의 유기징역
		10	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 (대표품목 : 리저직산, 플루니트라제팜 등)	4-①	
		11	대마나 임시대마를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	4-① 5의2-④	
		13	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한 자	18-① 21-①	
	②	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			-3년 이상의 유기징역
③	제1항(제5호제외) 및 제2항의 미수범			-처벌	
제60조 벌칙	①	3	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 (대표품목 : 디아제팜, 졸피뎀 등)	4-①	-10년 이상의 유기징역
	②	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			-해당 죄에서 정하는 형의 1/2까지 가중
	③	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			-처벌